

이 자료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일한경제협회보에 게재된 내용을 전문 번역한 것임.
- 편집자 주 -

일본이 보는 한국의 원유관세인하

글·니시무라 이사오 | 西村 功, 아시아 석유분석가

I. 서론

한국정부(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에 「7월 1일부터 원유관세를 인하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국은 그동안 수입원유에 대해 고율의 관세¹⁾(CIF@×수입량)를 부과하여 왔으나, 최근 국내외를 둘러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스스로의 과감한 비용절감 시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의 세율개정(CIF@×3%: 할당관세로서 금년 12월 31일한 수입신고서까지 적용)을 결단한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여당과의 정책회의를 거쳐 확정한 세제개정(관세율 및 원유수입부과금의 인하) 내용은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이다. 즉 ①수입원유(일반석유제품 정제용)에 대한 현행 관세 5%를 2%인하하여 3%로 한다. ②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하여도 현행세율 1%

를 무세화하고 동시에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수입나프타도 무세화한다 ③그 외에 현행 1~2%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광석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도 무세로 한다. ④원유수입부과금은 7월말부터 현행 14원/l를 4원 인하해 10원/l로 한다.

II. 원유관세 인하의 배경

한국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자원절약형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기업유도정책을 펼쳐 나프타, 철광석 등의 주요 수입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1~2%의 수입관세(정율제 방식)를 부과하여 왔다.(단 원유에 대해서는 관세율 5%를 적용)

하지만 경제가 글로벌화 되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자국기업이 국제무대에서 생존

1) 원유의 수입관세는 정율과세방식이며 [CIF단가×세율×수입량]으로 납부액 확정임.

해나가기 위해서는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를 위해서 국가가 주도하여 경쟁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여겨 재정경제부는 이번 발본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국이 지난 1997년 아시아 경제금융위기를 엄청난 구조개혁으로 극복해 멋진 V자형 회복을 이룬 것은 기억에 새롭다. 하지만 2003년 들어 개인소비가 위축되고 사스의 영향으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급격한 경기침체가 눈에 띠는 상황이다.

2003년 7월 10일자의 한국은행(중앙은행)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4~6월(2/4분기)의 GDP 경제성장률은 1.9%까지 떨어져 하반기에 약간의 회복이 기대된다지만 연간 3.1%의 수준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 4월에 발효한 예측치(4.1%)를 하향수정하였다. 한편 정부가 2002년도 실질GDP성장률은 6.3%였다 고 발표하여 한눈에 비교해 보더라도 그 침체부진이 눈에 띈다.

이러한 경제동향에 비추어 정부는 기업이 비용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서 철팽석, 나프타 등 12개 품목의 주요 수입기초원재료에 할당관세²⁾를 적용함과 동시에 원유에 대한 관세부과율도 대폭(현행세율의 40%)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폭적으로 인하한 원유관세는 석유제품 수입과의 관계가 걸려있다. 수입석유제품에 대하여 과세되는 관세율은 1989년에 원유와 동율인 5%였으나 그 후 2000년에 개정이 이루어져 새로운 기본관세율은 8%로 되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수입석유제품에 대해서 할당관세 7%가 적용되어 현재 원유(5%)와의 관세격차가 2%이다.

또한 석유수급과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관세와는 별도로 석유수입부과금(14원/l) 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쌍방에 대해 동일하게 세액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석유정제업계 5개사(SK, LG칼텍스정유, 인천정유, S-Oil, 현대오일뱅크)는 「이것으로는 정부가 주장하는 소비자정제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석유정제업계가 부담하는 여러가지 비용부담(소비자정제주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경제설비투자, 비축건설투자 등)은 석유제품수입업자에 비해 막대한 금액이고, 여기에 여러 세금부담이 증가해 이를 고려치 않는다면 공평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석유제품시장이 1997년 1월에 자유화된 이후 제품수입은 급증(석유제품수입의 국내 점유율추이 : 2000년 2.3%, 2001년 4.2%, 2002년 8.9%)하고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석유정제업의 가동율 하락과 주변국의 경제업 가동율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어찌 보면 석유수입사에 비해 국내석유정제업계가 오히려 불공평한 입장에 처해있다는 역차별 효과를 불러 일으켜 업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당장 부딪히는 문제는 관세차이인 2%이다. 석유정제 5개사는 선진국과의 관세차이를 비교해 볼 경우, 그 차이는 미미해 앞으로도 에너지국가기본정책의 일환으로서 소비자정제주의를 유지할 시 석유정제를 위해서 경제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석유정제업계(5개사)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며,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석유수입사와의 경비차이(세제면에 있어서)를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2003년 1월 16일에 대한석유협회를 통해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III. 관세율 개정에 따른 거시경제효과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입관세의 설정은 첫째 의미로는 국내산업 보호와 같은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국가운영에 대한 기여도의 관점에서는 플러스효과가 있는 한

2) 할당관세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입물품 수급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서 기본관세율에서 40%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하는 것이 가능한 탄력관세의 일종이다.(한국관세법 제71조) 또한 2003년 현재 할당관세의 적용품목수는 원면 등 73개 품목에 이른다.

편 자유무역 균형이 괴리됨에 따라 실질국민소득으로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충분히 고려된다.(관세부과대상 물품의 성격에 따라 다소 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이해득실을 근거로 한 이번의 관세율 개정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실질국민소득 향상효과

이번의 수입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화조치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투자촉진과 자원배분에 효과성 증대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국민소득 증대효과를 이루게 된다. 관세율 인하에 따른 실질국민소득의 증대효과에 관한 국립조세연구원의 계산에 의한 원유는 정부가 세수 1원을 포기할 경우, 1,254원의 실질소득 플러스효과를 얻는다고 계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수입 기초원자재무세화 등의 조치에 따라 국민소득(GDP)에 미치는 플러스효과는 3,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 무역수지 개선효과

수입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원자재수입의 규모가 다소 증가하고 기업의 원가절감에 따라 국내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어 생산제품의 수출은 증가하며 유사품의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관세인하효과를 합산할 경우 무역수지 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은 2002년 산업여건과 무역실적을 기준으로 한 경우 경제효과는 무역수지 개선효과로서 연간 약 1억 달러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 물가안정 효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고찰되고 있는 점은 도매물가에 최소한 0.021%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철광석 등 5개 품목은 도매물가지수의 편성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전술한 저감효과에



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유의 예를 들면 이번 관세율 인하(2%)에 따라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관한 리터당 4.2원 정도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해 이 결과 석유제품을 사용(소비)하는 모든 기업과 가계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국내주요산업에 대한 영향

· 석유정제업

원유는 거의 전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필수기초원자재이며 따라서 이번의 관세인하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은(숫자적인 효과)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출하가격은 4.2원/l 인하되어 도매가격은 0.0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석유화학산업

나프타는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이며 거의 전량이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3년 국내수요량 2,803만톤중 49.8%(1,395만톤 : 36억달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나프타, NGL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의 폐지(무세화)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하반기에 약 416억원의 원가절감 요소가 발생하여 그 만큼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철광석

철광석, 망간광 등은 철강제품용 필수원자재로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철강제품용 원료의 무세화로 금년 하반기에 210억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어 철강제품의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IV. 결론

한국경제는 부침(浮沈)이 급격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지난해까지의 경제활동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부가 신용카드 이용한도액을 인하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한 순간에 개인소비는 크게

침체하고 기업수익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해외에서의 투자도 감소되고 있고 사스문제와 이라크전쟁의 영향을 비롯하여 북핵문제가 차제에 한국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기 시작했다.

어느 쪽이든 한국경제는 성장을 4%가 경계선이다. 이를 밀둔다면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어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즉 데드라인으로 향하여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 정부가 조기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된다.

이번의 원유 관세율 및 수입부과금의 인하가 실현된 것은 한국 석유업계가 장기간에 걸친 요청을 계속 해왔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정부당국은 세수부족을 이유로 업계의 요청을 계속 거부하여 왔으나 자유화후의 석유세제 정책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제품수입은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지, 또한 예전부터의 소비지정제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에너지 기본정책과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이러한 문제를 정리해야 할 시기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석유수입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6월 11일에 한국석유수출입협회를 통해 이번의 세제개정에 대해서 「이대로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왜곡해 석유제품수입업자의 경쟁력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정부(재정경제부)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의 세제개정은 일시적으로 세수를 감소시키지만 국민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려고 하는(세수재원의 유효활용을 도모하려 하는)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며 제반 상황을 감안하면 절호의 타이밍이다. 또한 수입 원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10%, 미국 0.2%~0.4%, 일본 170엔/kℓ(세율로 환산하면 평균 1% 정도. 일본의 경우는 종량제이며 2006년 4월 1일부터 무세화가 결정되었다.)이며 극히 소수이다. 유럽국가는 물론 중국, 대만도 이미 무세화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도 언젠가는 무세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시대적인 대세(글로벌 스텐다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